|  |  |  |
| --- | --- | --- |
|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 조정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발개가격[2014]200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재정청(국), 환보청(국):  중국공산당의 제18차 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국무원에서 발표한 “대기 오염 방지 행동계획” 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요구를 만족시키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물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여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1.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을 조정하여 기업의 오염물 배출 감소를 촉진한다. 2015년 6월말 이전에 각 성(구, 시) 가격, 재정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는 폐기 중 이산화 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비 징수 표준을 오염물 단위당 1.2위안 이상으로 조정하고 오수 중 COD（Chemical Oxygen Demand）, 암모니아, 다섯가지 주요 중금속(아연, 수은, 크롬, 카드뮴, 비소)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을 오염물 단위당 1.4위안 이상으로 조정한다 . 모든 오수 배출구역에서 상기 5개 중금속 오염물에 대해 모두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기타 오염물은 오염물 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순서를 배열하며 최대 세가지 오염물에 대해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각 성(구, 시) 가격, 재정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는 해당 지역별 실제 상황에 따라 주요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을 조정하는 동시에 기타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도 적절히 조정한다. 오염 중점 방지 구역 및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상기 표준을 초과하는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가격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하여 오염 방지 및 배출 감소, 환경보호를 촉진한다.  2. 오염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비 징수 비율을 제고한다. 각 지역에서는 산업특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기업 오염물 배출 종류, 수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비 징수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 첫째,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이미 설치했고 유효성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동 모니터링 데이타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산정한다. 둘째, 자동 모니터링 데이타로 오염물 배출비를 산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014년말 이전에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국가 중점 모니터링 기업은 주요 오염물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2015년말 이전에 국가 중점 모니터링 기업 중 철강, 제지업, 시멘트 등 주요 오염산업에서는 자동 모니터링 데이타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산정해야 한다. 2016년말 이전에 모든 국가 중점 모니터링 기업은 모두 자동 모니터링 데이타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산정해야 한다. 셋째, 오염물 배출 종류가 많고 모니터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부에서 규정한 계산 방법 및 모니터링 데이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하게 오염물 배출비를 산정한다. 넷째, 정부가 제3자 업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3자 업체에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하며 모니터링 데이타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한다. 다섯 째, 오염물 배출비의 징수를 엄격히 집행하여 징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징수해야 한다  3. 차별화된 징수 정책을 실행하고 규제 및 장려체제를 구축한다. 기업 오염물 배출 농도가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상한치를 초과하거나 오염물 배출량이 오염물 배출총량 지표를 초과할 경우 각 성(구,시)에서 규정한 징수표준의 2배에 달하는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또한 상기 2개 상황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징수표준의 3배에 달하는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기업의 생산 공정 장비 또는 제품이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 버전)(개정안)” 에서 규정한 도태류에 속하는 경우에도 각 성(구,시)에서 규정한 징수표준의 2배에 달하는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기업 오염물 배출 농도가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상한치보다 50% 이상 낮을 경우 오염물 배출비의 50%만 징수한다. 각 지역에서는 상한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비 차별화 징수정책이 제대로 집행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환경 집법 및 검사를 강화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급 가격, 재정 및 환경보호부서에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환경 집법 검사 및 오염물 배출비 징수 관련 상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오염물을 몰래 배출하거나 유독 유해 오염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오염 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기를 지키지 않는 등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사회에 기업 오염물 배출, 오염물 배출비 징수 및 사용현황을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한다. 핫라인, 인터넷 신고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며 신고 받은 불법 오염물 배출, 오염물 배출비 무단 감면/면제 등 문제에 대해서는 건건이 조사하여 처리하고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각 성(구, 시) 가격, 재정 및 환경보호부서에서는 2015년 6월말 이전에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 조정 등 정책 실행 상황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는 협업하여 오염물 배출비 징수 현황에 대한 분기별 통보제도를 구축하여 규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  2014년 9월1일 |  | **关于调整排污费征收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  发改价格[2014]2008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发展改革委、物价局，财政厅（局），环保厅（局）：  　　为全面贯彻党的十八届三中全会精神，落实国务院印发的《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和《节能减排“十二五”规划》等要求，确保实现节能减排约束性目标，促使企业减少污染物排放，保护生态环境，现就调整排污费征收标准等有关问题通知如下：  　　一、调整排污费征收标准，促进企业治污减排。2015年6月底前，各省（区、市）价格、财政和环保部门要将废气中的二氧化硫和氮氧化物排污费征收标准调整至不低于每污染当量1.2元，将污水中的化学需氧量、氨氮和五项主要重金属（铅、汞、铬、镉、类金属砷）污染物排污费征收标准调整至不低于每污染当量1.4元。在每一污水排放口，对五项主要重金属污染物均须征收排污费；其他污染物按照污染当量数从多到少排序，对最多不超过3项污染物征收排污费。各省（区、市）价格、财政和环保部门可以结合当地实际情况，在调整主要污染物排污费征收标准的同时，适当调整其他污染物排污费征收标准。鼓励污染重点防治区域及经济发达地区，按高于上述标准调整排污费征收标准，充分发挥价格杠杆作用，促进治污减排和环境保护。  　　二、加强污染物在线监测，提高排污费收缴率。各地要结合行业特点，采取有效措施，加强对企业排放污染物种类、数量的监测，切实提高排污费收缴率。一是对已经安装污染源自动监控设施且通过有效性审核的企业，应严格按照自动监控数据核定排污费。二是扩大以自动监控数据核定排污费的应用范围。2014年底前，所有具备安装条件的国家重点监控企业，要完成主要污染物自动监控设施的安装并正常运行；2015年底前，国家重点监控企业中的钢铁、造纸、水泥等主要污染行业，实现严格按自动监控数据核定排污费；2016年底前，所有国家重点监控企业均要实现按自动监控数据核定排污费。三是对排放污染物种类多、无组织排放且难以在线监控的企业，应按照环保部规定的物料衡算方法和监督性监测数据，严格核定排污费。四是大力推广政府从第三方购买专业服务，由第三方负责安装、运营和维护污染源自动监控设施，确保监控数据真实、准确。五是切实加大排污费执收力度，做到应收尽收。  　　三、实行差别收费政策，建立约束激励机制。企业污染物排放浓度值高于国家或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限值，或者企业污染物排放量高于规定的排放总量指标的，按照各省（区、市）规定的征收标准加一倍征收排污费；同时存在上述两种情况的，加二倍征收排污费。企业生产工艺装备或产品属于《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1年本）（修正）》规定的淘汰类的，也要按照各省（区、市）规定的征收标准加一倍征收排污费。企业污染物排放浓度值低于国家或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限值50%以上的，减半征收排污费。各地要加强对超限值排放污染物的监测和动态甄别工作，确保差别排污收费政策落实到位。  　　四、加强环境执法检查，主动接受社会监督。各级价格、财政和环保部门要按照各自职责，加强环境执法检查和对排污费征收情况的检查，严厉打击偷排偷放、非法排放有毒有害污染物、不正常使用污染防治设施等违法行为；坚决查处未按规定缴纳排污费或者逾期不缴纳的行为，并依据有关规定进行处罚。要向社会公开企业污染物排放、排污费征收及使用情况等信息，提高透明度。要设立热线电话、网络举报等平台，畅通公众表达渠道；对举报的违法排污，擅自减征、免征、缓征排污费等问题，发现一起，查处一起，曝光一起。  　　各省（区、市）价格、财政和环保部门要在2015年6月底前，将调整排污费征收标准等政策落实情况报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和环境保护部；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和环境保护部将联合建立排污费收缴情况季度通报制度，对不按规定落实政策的地区，将予以通报。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  环境保护部  2014年9月1日 |